

1. 개정 이유

정신건강복지법령이 전면 개정·시행('17.5월)되었으나, 별도 정비없이 존치되어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「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(안 제14조제1항)

「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에 해당하는 증명서류(별표 7),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(별표 8)를 제출하도록 함

나.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제6항)

「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(입·퇴소, 운영 및 이용 등)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탈주방지시설 설치 의무, 수용인원 확대 규정 등 실제와 맞지 아니한 내용은 수정·삭제함(별표 9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 없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”을 “별표 9로 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별표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4. 별표 8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⑥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제17조제1항제3호 중 “별표 7”을 “별표 1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별표 8”을 “별표 11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별표 9”를 “별표 12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별표 10”을 “별표 13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별표 11”을 “별표 14”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“별표 12”를 “별표 15”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5호 중 “별표 11”을 “별표 14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별표 12”를 “별표 15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별표 7”을 “별표 10”으로 한다.

별표 7부터 별표 9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표 10부터 별표 12까지, 별표 13, 별표 14 및 별표 15로 한다.

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정신요양의 설치기준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.

제3조(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정신요양시설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작업 연월일 : . . .

※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9 제6호다목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입소자의 개인별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보존하여야 합니다.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- 5 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)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4조(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별표 7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</u>
<u><신 설></u>	4. <u>별표 8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</u>
3. 제6항에 따라 <u>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는</u>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	5. ----- <u>별표 9로 정하는</u> ----- -----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,</u>	⑥ <u>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정신</u>

수용인원, 종사자의 수와 자격,
이용 및 운영, 입소 및 퇴소 등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
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7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·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
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4.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
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② ~ ④ (생략)

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정신
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

요양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
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제17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별표 10

4. 별표 11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

한 기준은 <u>별표 9</u> 와 같다.	----- <u>별표 12</u> -----.
제19조(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)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<u>별표 10</u> 과 같다.	제19조(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3</u> -----.
제21조(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)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<u>별표 11</u> 과 같다.	제21조(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4</u> -----.
제50조(인권교육) ①·② (생략)	제50조(인권교육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<u>별표 12</u> 와 같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5</u>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규제의 재검토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53조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제21조 및 <u>별표 11</u>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행정처분의 기준: 2014년 1월 1일 6. (생략) 7. 제50조제3항 및 <u>별표 12</u>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: 2015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(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<u>별표 7</u>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력: 2015년 1월 1일 3. (생략)	5. ----- <u>별표 14</u>----- ----- -----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별표 15</u>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별표 10</u>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
---	--